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한국온천협회를 통한 온천자원조사 규정 알림

1. 온천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및 온천법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과 관련입니다.
2. 온천법 24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특)한국온천협회 위탁을 통한 온천자원조사로 온천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온천전문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720-5004)

붙임 : 온천자원조사 관련 온천법령 규정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특)한국온천협회,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장), 부산광역시(도시계획과장), 대구광역시(수질개선과장), 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장),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장), 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 대전광역시(생태하천과장), 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과장),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기도지사(지역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관광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물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로과장)

행정사무관 임군묵 지역균형발전 전결 2021.1.13. 과장 조성환

협조자 주무관 박해민

시행 지역균형발전과-188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522 팩스번호 044-204-8960 / mook1215@mail.go.kr / 대국민 공개